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608
----------	------

발의연월일 : 2020. 10. 22.

발 의 자 : 안호영 · 김영배 · 송옥주
양이원영 · 윤미향 · 윤준병
이소영 · 이수잔^배 · 이용빈
이원욱 · 임종성 의원
(11인)

제안이유

현재 정부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감축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와 같은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를 설정하는 등 저공해자동차 보급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가 자동차판매자에 부담으로 작용하여 충전소 설치 등 인프라 확충 실적도 자동차 보급실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보급목표제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제재방안이 부재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의견도 있음.

이에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 이월·거래제도를 도입하고, 무공해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운영 실적 등을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으로 전환하며, 보급목표제 미달성시 기여금을 부과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아울러, 현행법에서는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재사용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전기자동차의 폐배터리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반납된 폐배터리가 정부 소유임에 따라, 오히려 민간의 재활용을 제한하고 있음. 이에 폐배터리 반납 의무를 폐지하여 폐배터리 재사용과 재활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 내 수소차 관련 전산망의 법적 근거를 추가하고, 각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설치·운영 중인 충전인프라 정보를 통합관리함으로써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전기차 폐배터리의 재사용, 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전기차 폐배터리 반납의무를 삭제함(안 제58조제5항제3호 삭제).
- 나. 전기차뿐만 아니라, 수소차 등 무공해차 충전시설 정보를 관리하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설치·운영 중인 충전시설 정보를 통합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58조제16항, 제58조제17항 신설).
- 다.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이 보급목표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을 이월하여 사용하거나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무공해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운영 실적 등을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58조의3 신설).

라.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자동차판매자에 대하여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저공해자동차 보급 기여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되, 제도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자동차를 구매하는 자에 대한 저탄소차 협력금 부과·징수 규정을 삭제함(안 제58조의4 신설, 제76조의7 및 제76조의8 삭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전기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하여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거나, 건설기계”를 “건설기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16항 중 “전기자동차의 충전에”를 “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자동차와 그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에”로, “전기자동차 충전 정보관리 전산망”을 “전산망”로 하고, 같은 조 제17항 및 제18항을 각각 제18항 및 제19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⑰ 환경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제16항에 따른 전산망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58조의3부터 제58조의7까지를 각각 제58조의5부터 제58조의9까지로 하고, 제58조의3 및 제58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3(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의 이월·거래 등) ① 자동차판매자는 해당 연도의 저공해자동차·무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이 제58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급목표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다음 연도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이월하여 사용하거나 자동차판매자 간에 거래할 수 있다.

② 자동차판매자는 무공해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무공해자동차 생산·수입 후 판매되지 아니한 재고가 있는 경우 등 저공해자동차 보급에 기여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환경부장관에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초과실적의 이월·거래, 저공해자동차 보급 기여실적 인정방법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8조의4(저공해자동차 보급 기여금) ① 환경부장관은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자동차판매자(이하 “기여금 납부의무자”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저공해자동차 보급 기여금(이하 “기여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여금 납부의무자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기여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기여금은 무공해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운영 등 저공해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사용되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기여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기여금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은 체납된 기여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환경부장관은 기여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기여금을 내지 아니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한 기간 내에 기여금 및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기여금 납부의무자가 제76조의6에 따른 과징금을 동시에 납부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여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⑥ 기여금의 부과기준, 부과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의7 및 제76조의8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의 이월·거래, 저공해자동차 보급기여금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의3, 제58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보급실적부터 적용한다.

제4조(전기자동차 배터리 재사용·재활용에 관한 특례) 종전의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반납되는 배터리는 제58조제8항에도 불구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 매각할 수 있다.

한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배터리, 그 밖의 장치·부품

⑥ ~ ⑮ (생략)

⑯ 환경부장관은 저공해자동차 중 전기자동차의 충전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충전 정보관리 전산망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⑰ · ⑱ (생략)

<신설>

⑥ ~ ⑮ (현행과 같음)

⑯ -----
----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자동차와 그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에-----
-----전산망을-----

-----.

⑰ 환경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제16항에 따른 전산망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⑱ · ⑲ (현행 제17항 및 제18항과 같음)

제58조의3(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의 이월·거래 등) ① 자동차판매자는 해당 연도의 저공해자동차·무공해자동차 보급

실적이 제5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급목표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다음 연도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이월하여 사용하거나 자동차판매자 간에 거래할 수 있다.

② 자동차판매자는 무공해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무공해자동차 생산·수입 후 판매되지 아니한 재고가 있는 경우 등 저공해자동차 보급에 기여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환경부장관에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초과실적의 이월·거래, 저공해자동차 보급 기여실적 인정방법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8조의4(저공해자동차 보급 기여금) ① 환경부장관은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자동차판매자(이하 “기여금 납부의무자”라 한다)에

<신 설>

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저공해자동차 보급 기여금(이하 “기여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여금 납부의무자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기여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기여금은 무공해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운영 등 저공해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사용되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기여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기여금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은 체납된 기여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환경부장관은 기여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기여금을 내지 아니하면 30일 이상의

		<p><u>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한 기간 내에 기여금 및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u></p> <p><u>⑤ 환경부장관은 기여금 납부 의무자가 제76조의6에 따른 과징금을 동시에 납부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여금을 감액할 수 있다.</u></p> <p><u>⑥ 기여금의 부과기준, 부과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u>제58조의3</u> (저공해자동차의 구매 · 임차 등) (생략)	구매	<u>제58조의5</u> (저공해자동차의 구매 · 임차 등) (현행 제58조의3과 같음)
<u>제58조의4</u> (저공해자동차의 · 임차 계획) (생략)	구매	<u>제58조의6</u> (저공해자동차의 구매 · 임차 계획) (현행 제58조의4 와 같음)
<u>제58조의5</u> (저공해자동차의 · 임차 실적) (생략)	구매	<u>제58조의7</u> (저공해자동차의 구매 · 임차 실적) (현행 제58조의5 와 같음)
<u>제58조의6</u> (저공해자동차의 · 임차 촉진을 위한 협조요청) (생략)	구매	<u>제58조의8</u> (저공해자동차의 · 임차 촉진을 위한 협조요청) (현행 제58조의6과 같음)
<u>제58조의7</u> (저공해자동차 관련 정	정	<u>제58조의9</u> (저공해자동차 관련 정

보의 제공 등) (생략)

제76조의7(온실가스 저배출 자동차에 대한 지원) ① 환경부장관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자동차(이하 “저탄소차”라 한다)를 구매하는 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의 대상이 되는 저탄소차는 국내에서 제작되거나 수입되어 국내에 판매되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승차인원 10인승 이하의 자동차에 한정한다) 중 제76조의2에 따른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은 제76조의8에 따른 저탄소차 협력금의 징수 범위에서 하되, 지원금의 지원기준, 기준별 지급액,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저탄소차 구

보의 제공 등) (현행 제58조의7과 같음)

<삭제>

매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 업무를 자동차제작자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6조의8제1항에 따라 징수된 저탄소차협력금의 일부를 위탁비용으로 교부할 수 있다.

제76조의8(저탄소차협력금의 부

과) ① 환경부장관은 저탄소차를 구매하는 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자동차를 구매하는 자에게 부담금(이하 “저탄소차협력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는 국내에서 제작되거나 수입되어 국내에 판매되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승차인원 10인승 이하의 자동차에 한정한다) 중 제76조의2에 따른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삭 제>

③ 저탄소차협력금의 산정기준
및 부과·징수 절차 등에 필요
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
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저탄
소차협력금은 「환경정책기본
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
의 세입으로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저탄소차협력
금의 징수업무를 자동차제작자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
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된 저탄소차협
력금의 일부를 징수비용으로
교부할 수 있다.